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20조)

나.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신설

[안 제7장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안 제22조~제2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
-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2.6.30.~7.20./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20조는 「지방자치법」 용어와 맞추어 '구민'을 '주민'으로 개정함.
-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안 제7장)으로 의견제출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2조), 의견제출 방법(안 제23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24조), 의견제출 검토(안 제25조) 및 의견의 반영(안 제26조)과 의견제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차별대우의 금지(안 제27조),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28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자치법규안’에 준하여 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3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부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도시국 소속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사무분장 정비
  - 명칭 변경: 도시재생과 → 주거사업과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간 사무분장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국 소관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는 도시국 조직(제1항)과 분장사무(제2항)를 규정한 조항으로,

명칭 변경	▶ 도시재생과 ⇨ 주거사업과 ▶ 주택과: 주택사업, 시장재건축정비,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안 제10조제1항)
사무 정비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및 결정 등 ▶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등	(안 제10조제2항)

도시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과(제1호) 사무를 주택사업, 시장재건축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하며, 도시계획과(제2호) 사무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및 결정 등으로, 도시재생과(제3호) 사무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조정함.

##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4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비서실의 정책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비서 요원 필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정원 조정 내역

- 총 정 원: 1,489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1,484명 → 1,483명(감 1명)
- 별정직 계: 4명 → 5명(증 1명)

○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2)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개정전	비 율	25%이내	37.5%이내	25%이내	12.5%이상	
개정후	비 율	23%이내	33.5%이내	33.5%이내	10%이상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별표 3)

직급별 기관별		개정 전					개정 후				
		총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총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b>총 계</b>		1,489	1,489			1,489	1,489				
<b>정무직</b>		1	1			1	1				
<b>일반직 계</b>		1,484	1,484			1,483	1,483				
일반직	3급	1	1	-	-	-	1	1	-	-	-
	4급	9	7	1	1	-	9	7	1	1	-
	5급	66	33	2	13	18	66	33	2	13	18
	6급 이하	1,406	1,406			1,405	1,405				
	전문경력관	2	2			2	2				
<b>별정직 계</b>		4	4			5	5				
6급 상당 이하		4	4			5	5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서실의 정책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비서 요원 필요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2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서 7급상당의 비율을 높이고 그 외 다른 급 상당의 비율을 낮게 조정함.
-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표에서 안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 비율 조정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정원을 1명 증원함.

### ○ 검토결과

변화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보좌 전문 비서 충원을 위한 개정으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동일 직급 내 개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개편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개정·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현행화

1) 총 조례 5개/조문 8건(기획예산과 등 5개 부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관련 자치법규의 조문·내용·제명의 변경,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 삭제 등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기타 단순 용어정비를 위해 일괄개정의 방법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내 관련 행정규칙의 제명 개정을 반영함.

◆ 제명 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 법률 제명 및 조문 번호 개정을 반영함.

◆ 법률 제명 및 조문 번호 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내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문 삭제로 인한 조문을 삭제함.
  - ◆ 삭제 조문: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관련 법률 조문 번호 개정 반영 등 기타 용어를 정비함.
  - ◆ 제명 띄어쓰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 조문 번호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 ◆ 조문 띄어쓰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내 관련 법률 조문 번호 개정을 반영함.
  - ◆ 조문 번호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등포구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삭제 <2021.7.27>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28.>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만 적용한다.
    -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 (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5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21.>
  -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3. 21.>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 6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2021. 12. 21.>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